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2000년도에 신여성회관 건립 자원마련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바 있는(2회계년도 경과로 재승인 필요) 구금촌어린이 집과 구여성회관을 처분하여 장래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함.
- 문산읍사무소의 진입로내에 위치한 사유재산과 협소한 법원읍사무소의 진·출입로에 접한 사유지를 취득하여 진입부지로 활용함으로써 문산읍과 법원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청내 시청정보센타에 인접한 사유지를 취득하여 주차공간 확장과 청사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문산시내의 최저지대로 폭우시 유수량을 조절하는등 재난방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유수지를 취득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처 분

처분의 재산명	위 치	면적(m²)	금액(천원)	비 고
구 금촌어린이집	금촌동787-1외 1필지	토지: 2,569.6 건물: 339.74	1,223,740	처분
구 여성회관	금촌동782-4	토지: 473.8 건물: 610.5	765,811	처분
계	3필지	토지: 3,043.4 건물: 950.24	1,989,551	

○ 취 득

취득의 재산명	위 치	면적(㎡)	금액(천원)	비 고
법원읍사무소 진입로	법원리447-51외 2필지	토지: 232 건물: 167.88	214,000	취득
문산 유수지	문산리35-20	토지: 1,437	762,185	취득
문산읍사무소 진입로	문산리33-5	토지: 299	148,872	취득
시청청사부지	아동동349-22외 3필지	토지: 641	405,550	취득
계	9필지	토지: 2,609 건물: 167.88	1,530,607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지 방 자 치 법

제35조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등)

①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동 변경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구 금촌어린이집외 1개소에 대하여는 처분을, 법원읍사무소 진입로외 3개소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특히, 구 금촌어린이집 및 구 여성회관의 경우 2000년도 신여성회관 건립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난 제40회 정기회의시(1999년 12월) 동건 처분에 관하여 기 승인을 득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 2회계연도가 경과된 건으로 금번에 재차 승인을 신청한 건임.

나. 내용타당성

- 동 변경안은 법원읍사무소 진입로외 3개소의 취득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구 금촌어린이집외 1개소를 처분하고자 하는 건으로 내용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구 금촌어린이집외 1개소에 대하여 기 처분승인을 받은 후 지금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